

「2015년 정부 세법개정안」 주요내용 (중소기업)

※ 2015년 세법개정방향 : 청년일자리 · 근로자재산

- ① 경제활력 강화 : 청년일자리창출 지원, 소비여건 개선, 수출·투자활성화, 기업구조조정 뒷받침
- ② 민생안정 : 재산형성·주거안정 지원, 중소·벤처기업 근로자지원, 자영업자·농어민 지원
- ③ 공평과세 : 과세형평성 제고, 비과세·감면제도 합리화, 세원투명성 제고
- ④ 조세제도 합리화 :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,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

□ 일자리창출 지원

- 「청년고용증대세제」 신설 : 청년 정규직 증가인원당 500만원 공제(15~17)
- 中企 취업자(청년·고령자·장애인) 소득세 감면을 인상 : 50% → 70%(18년까지)
- 소기업 범위 개편 : 근로자수 및 매출액 기준 → 매출액 기준
-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(대학, 특성화고 등 2~25%) 대상에 고등기술학교 등 추가
- 「근로소득증대세제」(임금증가분 10%) 적용시 정규직전환자 증가분 10% 추가공제
- 中企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(16년까지)

□ 고용 안정

- 내일채움공제(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) 근로소득세 50% 감면 신설
- 중소기업 우리사주 6년이상 보유시 소득세 면제
-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기간 3년→5년으로 확대
- 중소기업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(50%/청년 100%) 일몰연장(18년까지)
-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(임금감소분 50%공제) 일몰연장(18년까지)
- 협력업체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허용

□ 협동조합

- 조합법인과세특례 세무조정 사항 추가 : 잉여금처분 손비, 부당행위계산부인
- 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(수입금액 100억초과) 세무조정 의무 부여(17년부터)

□ 벤처·창업 지원

-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: 5명이상 고용시 30억 → 50억, 신규창업 뿐 아니라 사업확장, 업종추가 등에도 적용 가능
-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(법인·소득세 50%) 일몰연장 (18년까지)
 - 업종추가 : (현행) 제조업 등 27개업종 → (추가) 보안시스템 서비스업
- 창업초기 중소기업 R&D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: 5년 → 10년
- 개인이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선택 허용
- R&D지출 연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내기업 엔젤투자 소득공제대상에 추가
-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, 징수유예기간 확대 : 1년→3년 (18년까지)

□ 소비여건 개선

- 개별소비세 정비
 - 개별소비세 폐지 : 녹용, 로열젤리, 향수
 - 기준가격 상향(200만→500만) : 모피, 보석·귀금속, 가구, 사진기, 시계, 가방, 용단
-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증가분 공제율 인상 : 30% → 50%(1년간)
- 문화접대비 한도 상향 : 일반 한도의 10%→20%, 기업개최공연 등 추가

□ 수출·통관 지원

- 수출중소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
 - 세관 수입신고시 선납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정산
- 중소·중견기업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(50%) 일몰연장(16년까지)
-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확대 : 수출일부터 2년내 → 3년내
- 중소기업 수입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관세감면(50%) 일몰연장(17년까지)
- 중소기업 수입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(30%) 일몰연장(17년까지)

□ 투자 · R&D 활성화

-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(3%) 일몰연장('18년까지)
- 근로자 복지증진시설(7~10%), R&D설비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('18년까지)
- 신성장동력 · 원천기술 분야 R&D 세액공제(20~30%) 일몰연장('18년까지)
- 기술이전 · 대여소득 감면(50%, 25%), 취득시 7% 세액공제 일몰연장('18년까지)
-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주식양도시까지 과세이연 신설
- U턴기업 법인세 · 소득세 · 관세 감면(100%/50%) 일몰연장('18년까지)
-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감면(3년간 100%, 2년간 50%) 일몰연장('18년까지)
-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(5년간 50%) 일몰연장('18년까지)

□ 기업 구조조정 지원

-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 구조조정시 세제지원 * 「기업활력제고 특별법」 연계
 -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, 증권거래세 면제
 - 합병에 따라 중복자산 처분시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(업종제한없이)
 - 자회사 채무 인수 · 변제시 손금산입
 - 자산수증, 채무면제, 자산매각 관련이익 과세이연(사업재편계획에 따라)
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· 주식취득 세제지원 요건 완화('18년까지)
- 중소기업 사업전환 세제지원(4년간 50%) 요건 완화('18년까지)
-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시 양도세 과세이연('18년까지)

□ 업종별 지원

-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특례 연장('16년까지)
- VAT 매입자납부특례 확대 : 철스크랩 추가(현행 금지금 · 고금 · 금스크랩 · 구리스크랩)

□ 비과세 정비 및 과세 강화

-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하 : [R&D·에너지절약] 10%→6%, [생산성] 7%→6%
- 신규상장 중소기업·중견기업 투자세액 우대공제율 4% 일몰종료
-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기준 강화 : 임직원전용 보험가입, 로고부착 등
-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단일화 : (현행) 中企 10%, 大 20% → (개정) 20%
- 중소기업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(10%) 면제 기간 종료
-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개선 :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만 환급
-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축소 : 연구행정·지원 사무인력 제외
- 매출액 10억초과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(1%) 제외
-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VAT 세액공제(건당 200원) 종료 (일몰 도래)
-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(10만원이상) 확대 : 가구·안경소매업 등 5개 추가

□ 납세자 권익보호

-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국세와 공유,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
- VAT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허용

향후 추진일정

- 8.7~8.26 입법예고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
- 9.11 까지 정기국회 제출

※ 상세내용은 '[협동조합 포탈](#)' 또는 '[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](#)'에서 확인 가능